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3월 23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0년 3월 23일
- 상정일자 : 제2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3월 25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먼저, 지역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6만2천5백원을 면제하여 87천여명의 주민세 56억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 또한, 지역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의 법인 사업자의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6만2천5백원을 면제하여 29천여 법인의 주민세 18억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곽영구)

#### ○ 이 시세 감면안은

- ▶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지역 의료기관 등에 대한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1)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 지역의 ‘코로나19’ 발생현황과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 ▶ 2020. 2.18. 대구시의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 내 급격한 확산세로 인하여 2020. 3.22.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6,38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0. 2.21.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2020. 3.15.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관리되고 있음.

#### 1)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 또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주요 국제기구·IB들은 중국 등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음.

\* OECD(3.2일)는 코로나19 영향 등 반영, 세계경제(△0.5%p) 및 중국경제(△0.8%p)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우리나라도 △0.3%p 하향(2.3→2.0%)

〈 주요 기관별 성장률 전망 수정 현황 〉

| 기관명 (시점)     | 한국(%p, %)        | 중국(%p, %)        | 세계경제(%p, %)      |
|--------------|------------------|------------------|------------------|
| IMF (2.22)   | -                | △0.4 (6.0 → 5.6) | △0.1 (3.3 → 3.2) |
| OECD (3.2)   | △0.3 (2.3 → 2.0) | △0.8 (5.7 → 4.9) | △0.5 (2.9 → 2.4) |
| 무디스 (2.16)   | △0.2 (2.1 → 1.9) | △0.6 (5.8 → 5.2) | -                |
| JP 모건 (2.28) | △0.3 (2.3 → 2.0) | △0.6 (5.8 → 5.2) | △0.1 (2.5 → 2.4) |
| S&P (2.19)   | △0.5 (2.1 → 1.6) | △0.7 (5.7 → 5.0) | -                |
| 골드만삭스 (2.25) | △0.6 (2.2 → 1.6) | △0.4 (5.9 → 5.5) | △0.2 (3.4 → 3.2) |
| 한국은행 (2.27)  | △0.2 (2.3 → 2.1) | △0.4 (5.9 → 5.5) | △0.2 (3.2 → 3.0) |

- ▶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심리지표가 악화되고 1/4분기 및 연간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측되고 있어 피해업종·분야에 대한 피해극복 지원과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제10조(세율)<sup>2)</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균등분)의 세율 중 대구시 관할 구역 내에 사업소를

2) 제10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시 관할 구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 10억이하 법인사업자의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시세 감면액은 116,400건 74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 그 외 대구시에서는 2020년도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3개월간 직권 연장하여 법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음.

##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시세 감면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감면안이라고 판단됨.

**참 고**

**지방세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주요내용**

| 대 상         |               | 주 요 내 용   |                           | 예 상 효 과                                       |  |
|-------------|---------------|---|---------------------------|---|--|
| <b>합 계</b>  |               |   |                           | <b>총 259억원 + α</b>                            |  |
| 지<br>방<br>세 | 시·<br>군·<br>세 | 자영업자 소<br>상공인 중소<br>기업 등<br><br>(129천명)             | 개인사업자<br>주 민 세<br>(균 등 분) | ○ '20. 8월 납부(연납) 면제<br>(지방교육세 포함 62,500원 → 0) | <b>60억원</b><br>(97천명 × 62,500원)                    |
|             |               |   | 법인사업자<br>주 민 세<br>(균 등 분) | ○ '20. 8월 납부(연납) 면제<br>(지방교육세 포함 62,500원 → 0) | <b>20억원</b><br>(자본금10억 이하 32천개 법인 ×<br>62,500원)    |
|             | 구·<br>군·<br>세 | 의료기관*<br>(15개소)<br><br>(감염병 전담<br>병원, 선별진<br>료소 운영) | 재 산 세                     | ○ '20. 7월, 9월 납부(연납) 감면(25%)<br>(건물)(토지)      | <b>5억원</b><br>(15개기관 × '19년 재산세 산출액 ×<br>25%)      |
|             |               |   | 주 민 세<br>(재 산 분)          | ○ '20. 7월 납부(연납) 면제                           | <b>2억원</b><br>(15개기관 '19년 납부액 기준)                  |
|             |               |   | 주 민 세<br>(종업원분)           | ○ '20. 6개월분(3월~8월) 면제                         | <b>22억원</b><br>(15개기관 '19년 납부액 기준)                 |
|             | 시·<br>군·<br>세 | 법 인<br>사 업 자<br>(26천개)                              | 법 인 지 방<br>소 득 세          | ○ 4월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br>납부기한 3개월 연장(4월→7월)       | <b>15억원</b><br>(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액 1,200억원<br>× 3개월 이자비용) |
|             | 임<br>대<br>료   | 착<br>임<br>참<br>여                                    | 한<br>료<br>자               | 재 산 세<br>(건 축 물)                              | ○ 임대료 인하액(1월~6월)의<br>10% 감면<br>(지방교육세 포함시 12% 감면)  |

\* 의료기관 :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은 더 확대 가능

-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카톨릭병원, 대구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파티마병원, 보광병원, 구병원, 삼일병원, 칠곡가톨릭병원, 더블유병원, 굿모닝병원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답 변  |
|--|--|
| ○ 착한 임대료 참여자의 경우 따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 ○ 착한 임대료 참여자(건물주)가 금년 6.1부터 6.30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구·군 세무과로 신청하면 됨. |
| ○ 시세 동의안 외 그 밖의 감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구·군과 협의한 재산세의 감면과 시, 대구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소유 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시행예정임.         |
| ○ 착한 임대료 참여자의 경우 건물 소유자로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 ○ 착한 임대료 참여자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는 국비로 보전하기로 결정되어, 시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도 있음.           |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